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자료집의 구성과 활용

- 이 자료집은 단위학교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을 적용할 때 교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 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2016년 5월 29일, 2016년 12월 20일, 2019년 3월 26일에 그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자료집의 구성 내용과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공교육정상화법 개요

I 장은 201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북**’의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습니다. I 장은 ‘1. 공교육 정상화법의 목적 및 소개’,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주요 용어 및 적용 예외, 학교와 학부모의 책무,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그리고 Q&A입니다.

II.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

II 장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시 교과별(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유의 사항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교과마다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록

2019년 3월 26일에 일부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과 2019년 12월 3일 개정된 시행령을 제시하였습니다.

C·O·N·T·E·N·T·S

I | 공교육정상화법 개요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및 소개	2
가. 목적	2
나. 용어 정의	3
다. 학교의 책무	5
라. 학부모의 책무	7
마. 적용 예외	7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9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9
나. 평가	11
다. 방과후학교	13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

1. 국어	18
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8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22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24
라.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26
2. 영어	30
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30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33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35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38

3. 수학

42

- 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42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46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47
-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51

4. 사회 / 도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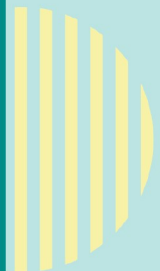
54

- 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54
- 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 56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58
- 라. 평가 시 유의 사항 59
- 마.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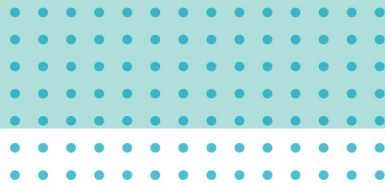
5.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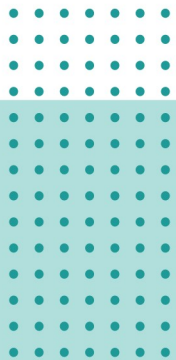
64

- 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64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68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72
-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78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I | 공교육정상화법 개요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및 소개

- 가. 목적
- 나. 용어 정의
- 다. 학교의 책무
- 라. 학부모의 책무
- 마. 적용 예외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 나. 평가
- 다. 방과후학교





I | 공교육정상화법 개요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및 소개

가. 목적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설

- 제1조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그 근거로서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사교육 중에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놓고 있음. 또한,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하겠음.
- (2)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은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 출제, 입학 전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 출제 등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음.
- (3)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정상화를 실현하고자 동 특별법을 제안함.

-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법은 특별법으로 선행교육, 선행학습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학교의 교육활동 시기, 학년 편성 등에 관하여 정한 법률들이 있으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 법이 우선한다.



나. 용어 정의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 가. 국가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나. 시·도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다. 학교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해설

- 제2조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사용되는 3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교육관련기관”, “선행 교육”, “선행학습”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관련 기관

-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학교이다. 각 법에서 정한 학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예시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선행교육

- 선행교육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학교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3) 선행학습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비교〉

구분	선행교육	선행학습
주체	교육관련기관	학습자
정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다. 학교의 책무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해설

-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
- 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교과 재구성, 수업 지도 및 평가 방법 등이 연간 교과지도계획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생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원하는 진로진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교사는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 활동 참여만으로도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도 및 평가 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시·운영해야 한다.

(2)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선행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교육과정 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학교 내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여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



학교 내 교육과정 기구들의 설치 운영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 2021. 1. 4., 일부개정]의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학교장은 학기 중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 편성된 과목과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행위,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등의 선행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관리해야 한다.

(3)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학교장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교과별(학년별) 교과 진도 운영계획 등을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연수 프로그램 예시〉

연수 주제	연수 내용
1. 공교육정상화의 의미와 목적	가. 공교육정상화 정책과 「공교육정상화법」의 이해 나. 학교 교육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역할과 참여
2. 학교 교육 정책과 학교교육과정의 이해	가. 학교 수업과 평가의 이해 나. 우리 학교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일정 안내 다. 입시 정책과 평가 제도의 이해
3. 학교 교육 활동에의 효과적인 참여 방법	가. 자녀의 바람직한 교우 관계 형성 방안 나.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의 안내

(4)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한 조항으로 2016년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선행교육 금지 지도·감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장, 학부모의 책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39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라. 학부모의 책무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해설

- 법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와 지지·지원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구성원이므로, 학교가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정부의 공교육정상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일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마. 적용 예외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6.〉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설

-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된다. 그런데 고유한 교육목적과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공교육정상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 교육원'을 말한다.

-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로서, 현재 '과학영재학교' 6개교, '과학예술영재학교' 2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 '영재학급'이란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하며, 해당 학교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학교 영재학급'과 지역의 여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 영재학급'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으로,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예술·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 각급학교의 장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급학교에 설치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경시·경연 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 근거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3)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2019년 3월 26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적용 배제 사항에 포함되었다.

-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4)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배제 교과

-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략)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해설

-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¹⁾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 학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편성 단계

- 초·중·고등학교는 학년별, 학기별 정규 교과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시·도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1) 본 자료집에서는 201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줄여서 '선행교육'으로 제시한 표현을 따름.



- 고등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내 과목 간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편성한다.
-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한다.

(2) 운영 단계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에 비하여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선행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지도 계획과 운영을 일치시킨다. 즉, 학교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해당 학기에 편성한 교과목을 충실히 운영한다.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한 학기 내에서 교과 교육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 학기 내에서 이루어진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단, 학교는 교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한 학기 내에서도 교육 내용의 위계를 고려한다.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수정 사항을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Q&A | 교육과정 편성·운영

Q.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에서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진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위계가 있는 단원 간에는 위계가 반영되어 학습 순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교과 간 통합 편성·운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Q.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 교과 관련 동아리활동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동아리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등)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나. 평가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해설

-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지필·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학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학생이 배운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한다. 학교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별 진도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출제하지 않도록 한다.
 -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교과교육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회 참여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내용을 선정한다. ‘각종 교내 대회’는 학교장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 대회 및 시상 계획 없이 단순 상품만 수여하는 대회 및 공모전 등을 모두 포함한다.



Q&A | 평가

Q.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서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진도가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 비하여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보 공시의 수정 없이 학교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는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앞서 지도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에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할 때 입학 이후의 학습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학습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학 전 진단평가에서 입학 이후의 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학 단계 이전 학교 급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Q.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 진도 계획에 맞추어 출제해야 합니다.



다.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2020. 10. 2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 12. 3.>
 1. 교육감이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9.5.]



해설

•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교교육과정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은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운영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후학교 교육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 방과후학교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휴업일²⁾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중·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교육감이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권한이 있었지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교육감에게 지정권한이 이양되었다.

2) 학교 휴업일은 수업일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날을 의미한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 등)에는 다음과 같이 휴업일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 등)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3. 2., 2019. 9. 24.>
-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Q&A | 방과후학교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해 연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참조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A. 최저 학년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교과 프로그램 외에 독서 논술, 로봇과학 등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나요?

A.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농산어촌³⁾ 지역 중·고등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는 선행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4호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농산어촌”은 읍·면의 전지역 또는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Ⅱ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국어

1. 국어

- 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 라.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국어

1. 국어

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 국어 교과 역량을 설정하고 역량 함양 교육의 실천 강조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 함양을 지향하기 위하여 6가지 국어 교과 역량을 설정하였습니다.

〈표 II-1-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역량

국어 교과 역량	의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
자료·정보 활용 역량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문화 향유 역량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
자기 성찰·계발 역량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

- 위 국어 교과 역량이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등 전반에 반영하였습니다.



(2) 핵심 개념 중심으로 내용 체계 설정

-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엄선해야 합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과 기능이 영역 및 교과 내, 교과 간 통합을 위한 연결 고리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내용 체계를 설정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의 ‘본질, 원리, 태도’나 ‘지식, 기능, 태도’와 같은 범주 구분 대신 내용 체계 표에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핵심 개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교육 내용 요소들이 어떻게 핵심 개념과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표 II-1-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 예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학년	
• 읽기의 본질	읽기는 읽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이다.	(생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락 이해하기 • 몰입하기 • 내용 확인하기 • 추론하기 • 비판하기 • 성찰·공감하기 • 통합·적용하기 • 독서 경험 공유하기 • 점검·조정하기
•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정서 표현 - 읽기와 매체	의사소통의 목적, 매체 등에 따라 다양한 글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읽기의 방법이 다르다.						
• 읽기의 구성 요소 - (생략) • 읽기의 과정 - (생략) • 읽기의 방법 - (생략)	독자는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기 목적과 상황, 글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						
• 읽기의 태도 - (생략)	읽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 읽기를 생활화할 때 읽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성취기준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제시

-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항목에 따라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성취기준을 설정한 취지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 II-1-3〉 성취기준에 제시된 정보의 사례

성취기준	[9국04-06]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가) 학습 요소	문장의 짜임(출문장과 겹문장,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
(나) 성취기준 해설	[9국04-06] 이 성취기준은 문장의 다양한 짜임을 익히고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장은 크게 출문장과 겹문장으로, 겹문장은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도 출문장으로 쓰느냐 겹문장으로 쓰느냐, 이어진 문장으로 쓰느냐 안은문장으로 쓰느냐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표현 의도에 따라 다양한 짜임의 문장을 국어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⑦ 문장의 짜임을 지도할 때에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치우치기보다는 특정한 짜임을 갖춘 문장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둔다. 아울러 문장 유형의 분류를 알게 하는 것보다 문장의 유형에 따른 표현 효과를 알게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② 음운, 품사, 단어의 표기나 발음, 어휘의 체계와 양상, 문장의 짜임, 담화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는 암기 위주의 단편적 지식에 대한 평가보다 원리에 대한 이해와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학습 요소’는 해당 영역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 학습 요소를 핵심어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과서 개발이나 단위 학교 수업에서 학습 내용의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학습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 ‘성취기준 해설’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성취기준이라기보다는, 해당 영역에 제시된 성취기준 중에서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성취기준에 대해 선택적으로 제시한 부연 설명입니다.
-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은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교수·학습 관련 유의 사항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및 유의미한 학습 경험 제공 등을 유도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은 해당 영역의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평가 관련 유의 사항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 특히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학습자 참여형 수업 강조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국어과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한 통합형 교수·학습’, ‘학습 활동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참여형 교수·학습’,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수·학습’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교육과정에서보다 강조해서 주목할 만한 항목은 ‘학습 활동 과정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참여형 교수·학습’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등 교실 수업의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또 수업 시간에 경험한 활동이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활동 과정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교육 내용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유의미하게 구조화된 활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강조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과정과 평가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평가 경험을 통해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에 평가의 방향에서 평가 기준이나 방향을 학습자에게 미리 안내하여, 학습자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가 수행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 고등학교 과목 구조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원화

-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이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목 없이 ‘일반 과목’ 6과목이었던 과목 구성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 1과목, 일반 선택 과목 4과목,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표 II-1-4〉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목 구성 비교

2009 개정				2015 개정					
구분	교과 영역	교과 (군)	과목	구분	교과 영역	교과 (군)	과목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기본 과목	-	보통 교과	기초	공통 과목	국어	
			일반 과목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국어	일반 선택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심화 과목	-				진로 선택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전문교과 I	예술 계열	문예 창작 입문, 문학 개론, 문장론, 문학과 매체, 고전문학 감상, 현대문학 감상, 시 창작, 소설 창작, 극 창작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를 시행할 때 다루는 수준과 범위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1) 공통 과목 ‘국어’는 국어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통 과목 ‘국어’는 국어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 국어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 ‘국어’ 이수 후에 편성하여 운영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 중 ‘실용 국어’는 공통 과목 ‘국어’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음.

(2)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음

-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중심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단, 학교의 여건, 학생의 요구 등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문 교과를 개설하는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며, 해당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을 국가 수준의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사례 전문 교과 I의 예술 계열 과목 ‘현대문학 감상’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경우, 해당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어과 선택 과목 ‘문학’과 병행하거나 ‘문학’ 과목을 이수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수 시기를 조정하여 편성하는 것을 권장함.



(3) 교육과정에 맞게 교과 진도 운영 계획(수업 계획, 교과 진도표)을 작성하여 공시한 후 계획에 따라 실제 수업을 실시해야 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연 2회(4월, 9월)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의 시기와 순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되는, 공신력을 갖춘 문서이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된 객관적 자료이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 후 공시 자료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사례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의 학습 내용이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과목의 학습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교과 진도 운영 계획에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서술(예 : 적용(심화) 학습, 통합 수업 등)한 후 실제 수업에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따라서 교과 진도 운영 계획에 제시된 학습의 순서와 시기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4)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할 때에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습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야 함

-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한 통합형 교수·학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과잉 해석하여 아직 배우지 않은 다른 학년이나 과목의 성취기준을 차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수업도 반드시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에 근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재구성의 방향을 탐색하고 학습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구성의 과정에서 성취기준을 통해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과 학생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임의로 변형하지 않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에서 국어의 역사성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할 때, 일반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에서 배워야 할 고대 국어 자료와 지식을 가져와 가르치는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5)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 학습을 도와주는 교재이므로 이들 교재에 제시된 참고 내용이나 보충 자료 등이 성취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함

-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고 심화 학습을 이끌어 주기 위해 다양한 참고 내용이나 보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자료 중에는 성취기준과 상관이



없거나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내용이나 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재구성해 활용하여야 합니다.

사례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한 교수·학습 자료(학습지 등)나 보충 자료 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지 않고 자료에 있는 그대로 가르친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6) 수업에서 부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성취기준에 대한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지는지, 선행학습 요소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수업에서 부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수능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집을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집에는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선행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부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부교재의 내용 중 선행학습에 해당하는 요소를 꼼꼼하게 선별하여 수업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사례 수업에서 수능 연계 교재를 부교재로 활용하면서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을 벗어난 심화 내용을 가르치거나 아직 배우지 않은 과목의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 학교교육과정에 맞게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함

-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평가 계획’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국어과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정보공시 항목에도 포함됩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제에 맞게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성취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평가 계획’, ‘문항 정보표’ 등을 작성해야 함

- ‘성취기준’은 학생의 특성이나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 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교과 교육



과정에 포함 또는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문항을 출제해야 합니다. 성취기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를 진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평가 문항에 맞는 성취기준을 정확히 살펴보지 않고 ‘문항 정보표’를 작성했을 경우, 평가 문항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문항과 성취기준 불일치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평가 문항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고난도의 문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행교육 요소를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 대비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연합학력평가나 수능 기출 문제,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제 등을 활용하여 평가 문항을 설계할 경우, 해당 학년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과 관련이 없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의 문법 단원 문항을 출제하면서 난도를 높이기 위해 ‘언어와 매체’ 과목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나 EBS 교재 수록 문항을 출제한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4) 수능 대비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평가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위험함

- 특히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수업에서 학교교육과정의 편제를 벗어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의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례 고등학교 3학년에서 ‘화법과 작문’ 과목을 편성하여 교과진도 운영계획과 평가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독서’, ‘문학’ 등 다른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고 지필평가에서 ‘독서’, ‘문학’ 등 다른 과목에 해당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한 경우 법령 위반이 됨.

사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언어와 매체’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실제 평가 문항에서 매체 자료 내용에 ‘문학’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 문항을 출제한 경우 법령 위반이 됨.

(5) 지필 평가뿐만 아니라 수행 평가에서도 선행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행 평가 과제를 설계할 때 점검해야 함

- 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행 평가에서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학습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행 평가 계획 단계에서 성취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6)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선행 출제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예시 선행 출제 점검표

점검 항목	예	아니요	비고
1. 학교교육과정 편제에 맞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평가 문항이 작성되었습니까?			
2. '평가계획'의 성취기준은 해당 교과와 성취기준이며 명확히 진술되었습니까?			
3. '문항정보표'의 성취기준은 해당 교과와 성취기준이며 명확히 진술되었습니까?			
4. 각각의 문항과 성취기준의 연결은 정확하고 적절합니까?			
5. 문항 중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다룬 문항은 없습니까?			
:			

(7) 선행교육 예방을 위해 '교과 진도 운영 계획' 및 '평가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반드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함

- '교과협의회'는 교과별 수업·평가 계획(지필 및 수행 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 비율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협의록에 기록하고 결재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 비율(인정점 부여 기준 포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을 심의 합니다.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 발견되어 '교과 진도 운영 계획' 및 '평가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변경된 사항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하지 않도록 함

- '각종 교내 대회'는 학교장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 대회 및 시상 계획 없이 단순 상품만 수여하는 대회 및 공모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각종 교내 대회 중 교과 관련 대회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진도 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과 관련 대회인 '우리말 바로 알기 대회'에서 공통 과목 '국어'의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벗어나거나 일반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함.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교과교육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회 참여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내용을 선정해야 함

-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 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의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 진도 계획에 맞추어 출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참가 대상 학년을 제한하거나 학년별로 대회를 분리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과 관련 대회인 '독서논술대회'는 국어과 선택 과목 '독서'를 이수 중이거나 이수 후인 학년이 아닌 최저 학년에 맞추어 출제하여야 함.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Ⅱ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영어

2. 영어

- 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영어

2. 영어

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영어의사소통역량 함양 강조

- 영어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써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 및 지식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학교 영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역량을 함양하여야 합니다.

(2) 영어과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 강조

- 영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하여 영어과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입니다. 영어과의 핵심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어 의사소통 역량’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 이해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기관리 역량’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학습 동기,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 전략, 자기관리 및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이며 정보 수집·분석 능력, 매체 활용능력, 정보 윤리와 관련된 역량을 의미합니다.
- 영어과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성격과 영어과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볼 때 학생들은 영어 교육을 통해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학습자 각자의 지적 역량을 신장시키고 학습자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3)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제시

- 영어과 교육과정은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된 내용체계표를 제시하여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영어과 교육과정은 언어기능별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의 내용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II-2-1〉 고등학교의 공통과목 '영어'의 듣기 영역 내용체계표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듣기	소리	소리,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한다.		식별하기
	어휘 및 문장	낱말, 어구, 문장을 이해한다.		파악하기
	세부정보	말이나 대화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 대상, 주제 • 그림, 사진, 도표	파악하기
	중심내용	말이나 대화의 중심 내용을 이해한다.	• 줄거리, 주제, 요지	파악하기 추론하기
	맥락	말이나 대화의 흐름을 이해한다.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 일이나 사건의 원인, 결과 • 상황 및 화자 간의 관계 • 화자의 의도, 목적 • 화자의 심정, 태도	파악하기 추론하기

(4) 영어과 성취기준 도출 및 성취기준 해설 제시

- 내용체계표에 제시된 핵심 개념과 이를 구체화한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내용 요소와 기능을 활용하여 영어과의 성취기준을 도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등학교의 공통과목인 '영어'의 듣기 영역 성취기준 예시입니다.

[10영01-01]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0영01-02]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0영01-03]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0영01-04]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나 말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10영01-05]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화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영어'의 듣기 영역에서는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와 중심 내용을 이해하며, 목적 및 상황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실제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이해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 관심, 동기를 유지시킴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 시키도록 합니다.



- 제시된 성취기준은 구체적인 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듣기 성취기준인 ‘[10영 01-01]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일상 생활이나 학업과 관련된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시간, 장소, 이유 등 정보를 파악하거나 관련된 내용과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를 묻는 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5)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강조

- 영어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실현상의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듣기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의 예를 살펴보면, 첫째,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듣기 활동을 통해 말이나 대화의 세부 정보, 중심 내용, 맥락을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둘째, 효율적 듣기 활동을 위해 듣기 전 활동, 듣기 중 활동, 듣기 후 활동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도합니다. 셋째, 의사소통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합니다. 넷째, 다양한 시청각 자료 및 웹 기반 동영상 등 정보 통신 기술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강조

- 고등학교 영어 과목의 4가지 영역 중 듣기 영역을 평가할 때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평가의 내용과 수준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근거로 선정하여 평가의 목적에 따라 독백, 대화, 담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 언어를 사용합니다.
- 평가의 목적과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종합적 이해 문항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 ‘영어’의 어휘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고 난이도가 적절한 언어 형식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듣기 평가를 위한 녹음 대본을 만들 때는 대화문을 사용하거나 음성 언어로 된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진정성을 높입니다.
- 말의 속도는 학습자의 수준과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학습자들에게 친숙하며 자연스러운 속도가 되도록 합니다. 또한 수행평가의 경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연계하여 이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1) 학생이 3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편성·운영함

-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학생이 3년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사례 영어교과외의 경우 선행교육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단위 학교별로 수립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안을 담당 교사(학급담당 교사와 진로담당 교사 등)가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택 과목의 과목별 성격과 과목 내 위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담당 교사가 입시 준비를 위해 기존에 수립된 교육과정 편성과 상이하게 운영할 경우 선행교육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2) 영어교과 보통교과의 공통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함

- 공통 과목은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어교과외의 공통 과목인 '영어'를 편성하여 학생들이 선택 과목 이수 전에 이수하도록 합니다.
- 다만,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기본 영어'와 '실용 영어'는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영어'와 '실용 영어'는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교육과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어과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상호 점검 및 조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 과목 선택이 복잡하므로 교육과정 편성 시 영어과 교사들의 교과협의회, 교육과정 전담부서와의 협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사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과목 선택 시 교과목 위계에 벗어난 과목 선택 등의 선행교육 위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고교학점제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므로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학교 연합형, 거점 학교형 선택 운영)에 대해 숙지함으로써 선행교육 위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3) 영어과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간의 위계는 I 과 II로 표시하므로 I 과 II로 구분된 과목의 경우 I 을 먼저 이수하고 II를 이수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다만, 학생의 학습 능력, 선수 학습의 정도에 따라 I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바로 II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4) 과목별 교육과정 허용 어휘와 어휘 수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과목별로 허용 어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에 따라 허용되는 어휘와 어휘 수가 상이합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 II-2-2〉 고등학교 영어교과의 과목별 어휘 수

2015 개정 고등학교 선택과목별 어휘 수		
과목명		어휘 수
공통	영어	1,800 내외
	영어 회화	1,500 이내
일반 선택	영어 I	2,000 이내
	영어 독해와 작문	2,200 이내
	영어 II	2,500 이내
진로 선택	실용 영어	2,000 이내
	영어권 문화	2,200 이내
	진로 영어	2,500 이내
	영미 문학 읽기	3,000 이내

※ 중학교(1~3학년군)의 허용 어휘수는 750단어 내외이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허용하는 어휘 수인 500단어를 포함하여 총 1,250단어임.

사례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허용하는 어휘와 어휘 수를 고려하여 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허용 어휘 수가 많은 선택과목을 ‘영어’ 또는 ‘영어 I’보다 먼저 편성하지 않도록 함.

(5) 편성된 교육과정보다 학기 단위를 넘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과 진도 운영 계획과 일치하도록 운영함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행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서서 편성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또는 학년을 앞서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어교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운영하는 과목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정에 맞게 영어 수업을 계획하고 교과진도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한 후, 공시된 진도 운영계획과 실제 수업 운영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사례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한 학기 내에서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의 사례가 아님. 그러나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앞당겨 이전 학년에서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음.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교과 진도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운영계획을 정보공시에 반영해야 함.



사례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제 부여, 지도, 평가하는 것은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해당됨. 고등학교 입학 이전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영어 과제를 부여하거나, 영어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고등학교 내용의 과제를 부여하거나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됨.

사례 교사가 동아리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영어교과 교육과정(교과진도계획 등)에 앞서 교육 내용을 지도해서는 안 됨. 그러나 해당 학기에 편성·운영되는 학교의 영어교과 교육과정(교과 진도계획 포함) 범위 내에서의 심화 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수업 시간, 쉬는 시간 중의 질문 등)에 따른 선행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함.

(6) 영어과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맞게 영어수업을 계획하고 교과 진도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정보공시 한 후 교과 진도 계획에 맞게 수업해야 합니다. 이때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사례 영어교과 교육과정과의 성취기준에서 강조하는 의사소통중심의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강조함.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1)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에 학습할 내용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서 반영하지 않음

-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에 학습할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과 관련됩니다. 영어 수업이 진도계획에 비하여 빠르게 이루어져서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교육 과정 재구성과 정보공시에 수정된 내용을 재공시하여야 합니다.

사례 정보공시의 수정 없이 수업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거나 2학기에 편성된 영어 교과 내용을 1학기에 지도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함. 그러나 한 학기 동안에 해당 교과 내용의 진도 순서를 바꾸거나 앞서 진행하는 경우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2)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영어과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하는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여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즉 다음에 진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과 평가계획에서의 성취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가계획 작성 시 학습 진도 계획상의 성취기준과의 일치여부 평가계획에서 성취기준의 비율을 균형 있게 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며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 고등학교의 '영어회화' 과목이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은 듣기와 말하기 영역이며 학생은 이들 성취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요구됨. 따라서 '영어회화' 과목 평가 시 독해지문을 출제하거나 어법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이 과목의 성취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사례 대부분 중학교의 영어교과에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선행교육을 위반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학년 초에 수립하여 공시하는 평가계획과 실제 학기 중에 실시하는 영어 평가 문항 및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 등)가 계획과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출제하고 있다고 문항카드에는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문항은 해당 성취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영어의 4가지 언어 기능별 성취기준 중 지나치게 일부 성취기준만을 활용하여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어휘나 문법 문항을 지나치게 많이 출제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함.

(3) 선행학습 위배를 방지하기 위해 영어과 문항출제를 관리함

- 「공교육정상화법」제정(2014.3.11.) 이후 학교 내 선행교육 관행 근절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현장 교사들은 평가 문항 출제 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사 연수 실시와 교육과정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위 학교 내, 영어과 내에서 선행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보공시를 한 교육과정의 학년별 평가가 계획대로 실제 평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학기별 1회 점검과 지필 및 수행 평가 실시 후 평가 문항과 내용의 일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험 문항 출제 전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며 교과협의회를 통해 선행교육 위배 여부를 상호 점검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4) 문항 출제는 영어과 진도 계획의 범위와 일치해야 함

-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배하지 않도록 정기고사의 문항 출제 시 영어과 진도 계획의 범위를 넘어서 출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례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배되는 영어과 문항으로는 영어 교과 진도 계획과 상이한 경우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과 진도 계획서를 작성하고 문항 출제 시 문항과 진도 계획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

사례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계획은 5월인데, 교과 진도 운영계획 상 7월에 진도가 마무리되었다면 이것은 선행교육 예방에 어긋나는 경우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수업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이 필요함

(5) 문항 출제 시 교육과정의 어휘 수준 및 허용 어휘 수 고려

- 영어교과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 수준과 목록의 오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문항 출제 시 과목별 허용 어휘와 어휘 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영어교과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목별 어휘목록에서 벗어난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례임. 예를 들어, 중학교 영어에서 허용하는 어휘 수는 1,250단어이며 이 범위 내에서 평가 문항을 출제하여야 하며 변별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영어 I' 또는 '영어II'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어휘를 사용한 경우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함.

(6)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나 EBS 수능연계교재 사용 시 학년을 고려함

-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의 지문 또는 3학년 EBS 수능연계교재의 지문을 1, 2학년 평가에 사용 시 1, 2학년의 교과진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영어과에서 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출제한 지문을 이용하여 시험 문항을 출제할 경우 교과 진도계획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풀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또한 고 1, 2학년의 시험 문항 출제 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EBS 수능연계교재(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나오는 지문을 이용하여 출제하지 않도록 유의함.

사례 정규수업 부교재 및 방과후학교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선행학습의 여지가 있는 교재)에는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음.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각 대회 및 교내 대회는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함

- 교외 대회 참여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기나 학년을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회를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 대상 학년을 제한하거나 대회를 학년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내 대회를 위한 문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영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을 위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므로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대회인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 진도에 맞추어 문항을 출제해야 합니다.

사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연극 대회,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 허용하는 어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단어로 원고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배 사례에 해당됨. 학교에서는 영어 독서 콘테스트와 영어 골든벨 대회 등을 개최하여 전교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선행교육 위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사례 교내대회를 계획하여 시행할 때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특히, 참가 학년이 두 개 이상이거나 전교생일 경우 고학년의 내용을 출제하면 안 됨. 대회 주관 시, 출전 대상 학년을 제한하거나 학년별로 대회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함.

(2) 선행교육 위배 방지를 위한 영어과 방과후학교 운영 원칙을 준수 함

- 영어과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 동일 학기 또는 동일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고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저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례 학습 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과에서 학년 구분 없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배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저학년 학생이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배 사례에 해당됨.



사례 선행학습 예방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계획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운영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상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 또는 활용해서는 안 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 시 단위 학교 교과서 선정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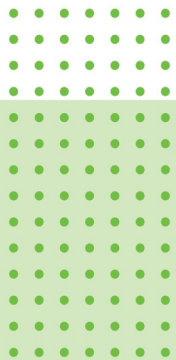
사례 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한 소수 학생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함. 예를 들면, A고등학교에서 「***」 과목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수 학생들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적합한 절차를 거쳐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고,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의 위계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운영 되는 선택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함.

(3) 방학 중 방과후학교의 영어교과 프로그램은 한 학기 또는 상위 학년을 앞서 편성·운영이 가능함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 영어교과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현재 학기 또는 학년보다 앞서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Ⅱ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수학

3. 수학

- 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수학

3. 수학

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⁴⁾

(1)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수학 교과 역량의 설정

-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 교육을 교과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6 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설정하였습니다.

〈표 II-3-1〉 수학과 교과 역량의 의미와 하위 요소

수학과 교과 역량	의미	하위 요소
문제해결	해결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 전략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 / 계획 실행 및 반성 / 협력적 문제해결 / 수학적 모델링 / 문제 만들기
추론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정당화하며 그 과정을 반성하는 능력	관찰과 추측 / 논리적 절차 수행 / 수학적 사실 분석 / 정당화 / 추론 과정의 반성
창의·융합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고 정교화하며,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수학과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독창성 / 유창성 / 융통성 / 정교성 / 수학 내적 연결 / 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
의사소통	수학 지식이나 아이디어, 수학적 활동의 결과, 문제 해결 과정, 신념과 태도 등을 말이나 글, 그림, 기호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능력	수학적 표현의 이해 / 수학적 표현의 개발 및 변환 / 자신의 생각 표현 / 타인의 생각 이해
정보 처리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활용하고 적절한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선택·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자료의 정보 수집 / 자료와 정보 정리 및 분석 / 정보 해석 및 활용 /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용
태도 및 실천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주적 수학 학습 태도와 민주 시민의식을 갖추어 실천하는 능력	가치 인식 / 자주적 학습 태도 / 시민의식

4)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은 수학과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적용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정리한 것임.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수학과 교육과정(제2020-236호)〉,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한국과학창의재단, 2015)〉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수학 교과 역량은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용 체계'의 '기능' 항목에서 수학 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능력을 제시하였습니다.

(2) 수학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학습량의 적정화

- 수학 학습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국가 교육과정에서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교육부,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2015.3.6.)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학습량과 난이도를 적정화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를 위하여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조직하여 학습량을 경감하고 내용 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핵심 개념'은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의 기초적인 개념이나 원리로서 학생들이 학습 후에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잊어버린 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큰 개념(big idea)입니다.

[중학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수와 연산	수의 체계	수는 방정식의 해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 정수, 유리수, 실수 등으로 확장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인수분해 • 정수와 유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수와 순환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곱근과 실수 	이해하기 계산하기 판단하기
	수의 연산	각각의 수체계에서 사칙계산이 정의되고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한다.				

[그림 II-3-1] 중학교 수와 연산 내용 체계(교육부, 2020, p.7)

- '일반화된 지식'은 '핵심 개념'와 '내용 요소'를 매개하며, 학년 및 학년급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명제적 지식 형태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학생들이 '내용 요소'를 학습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학 교과 고유의 탐구 및 사고 능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 이러한 내용 체계의 제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의 적정화가 단순히 학습량의 감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년과 학교급을 관통하는 수학 내용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학교 수학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수학 난이도 적정화의 구체화

- 수학 학습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학습과 평가에서 학습 내용 난이도를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학습 내용의 감축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나는 수학 학습이 이루어지거나 평가 문항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실제적인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부 수학 내용에 대하여 수학 학습과 평가의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였습니다.
- 수학 내용에 대하여 수학 학습과 평가의 범위와 수준은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 한하여 다룬다.”, “... 정도로 간단하게 다룬다.”, “... 것 만 다룬다.”, “...는 다루지 않는다.”와 같은 형태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표 Ⅱ-3-2〉 과목별 수학 난이도 관련 진술문 일부 예시 (공통 과목, 일반 선택만 제시)

교과목	수학 난이도 관련 진술문 일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수학(중학교)	• 유리수를 순환 소수로 나타내는 것은 다루지 않는다.	• 함수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활용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수학 (공통 과목)	• 명제의 증명은 간단한 것만 다룬다.	•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수학 I	•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 복잡한 합성함수나 절댓값이 여러 개 포함된 함수와 같이 지나치게 복잡한 삼각함수를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수학 II	•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는 직선 운동에 한하여 다룬다.	• 도함수를 활용하여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거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를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미적분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은 지수함수 e^x 와 로그함수 $\ln x$ 의 도함수를 구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간단히 다룬다.	• 여러 가지 적분법과 정적분의 활용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확률과 통계	• ‘염주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은 다루지 않는다.	• 모평균의 신뢰구간을 다룰 때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4) 수학 교과목의 연계성 제시

- 수학 학습 내용은 학문 성격에 의해 위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일부 과목은 이러한 위계성으로 과목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성격'에서 각 과목 간의 학습 연계성 및 위계성을 제시하여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표 II-3-3〉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수학 교과목의 연계성

교과목		연계성
공통 과목	수학	중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을 학습한 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일반 선택	수학 I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학 II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미적분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I>과 <수학 II>를 학습한 후,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확률과 통계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진로 선택	기하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기하적 관점에서 심화된 수학 지식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실용 수학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수학이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수학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 해결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경제 수학	일반 선택 과목인 <수학 I>을 학습한 후,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학과제 탐구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수학과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수학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수학과제 탐구 능력을 향상 시키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기본 수학	중학교의 수학을 학습한 후,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의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 <기본 수학>에서 학습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은 공통 과목인 <수학>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수학 전문 교과 과목을 학습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함
인공지능 수학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학과 교수·학습 및 평가를 실행할 때 다루는 수준과 범위가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1) 과목 간 위계를 준수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함

- 과목 편성 시, 편성하려는 과목을 학생들이 이수하기 위해 사전에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과목이 있는지, 그 과목이 편성하려는 과목보다 이전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들은 공통 과목인 고등학교 <수학>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편성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러나 일반 선택에서 <미적분>은 <수학 I>과 <수학 II>를, 진로 선택에서 <경제 수학>은 <수학 I>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편성할 수 있는 과목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미적분>을 <수학 I> 혹은 <수학 II>과 이전 또는 같은 학기에 편성함
- <경제수학>을 <수학 I> 이전 또는 같은 학기에 편성함
- 선수학습과목인 고등학교 <수학>을 <수학 I>과 같은 학기 또는 다음 학기에 편성함.

(2)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는 일치해야 함

-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학년 초 수립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계획과 실제 운영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교육과정 편성과 다른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
-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계획은 일치하나 실제로는 다른 교과 혹은 과목의 내용을 지도함.
-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계획은 일치하나 평가 문항에 다른 과목의 내용 일부를 포함함.

(3) 여러 과목을 동시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더라도 교과 내의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해야 함

-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삼각함수 → 삼각함수의 극한 → 삼각함수의 미분, <수학 I>에서 지수와 로그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같이 단원 간 위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 전문 교과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전문 교과와 일반 교과를 동시에 편성하는 경우 교과 수준이 아닌 단원 수준에서 학습 내용 간 위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기하> 교과의 내용이 전문 교과인 <심화



수학 I), <심화 수학II>에 소단원 수준에서 분할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화 수학 I>의 삼각함수 단원에는 <수학 I>의 삼각함수와 <미적분>의 삼각함수의 덧셈정리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수학 I>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지도하고, 전문 교과인 <심화 수학 I>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지도하는 경우
 - ※ <수학 I>의 삼각함수에 ‘삼각함수의 덧셈정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
- <심화 수학 I>, <심화 수학II>를 같은 학기에 편성하고 <심화수학 I>의 삼각함수를 지도하는 시기에 <심화수학II>에서는 삼각함수의 적분을 지도하는 경우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1) 평가 문항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출제해야 함

-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교과서나 지도서의 내용도 교육과정 내의 내용인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과서의 “탐구하기”, “창의 융합 코너”, “사고력 키우기” 등의 특별 코너 및 읽기 자료 등에 실려 있는 내용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BS를 포함한 시중의 교재나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평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확률과 통계> 교과서의 특별 코너에 실린 기하학적 확률을 출제하여 평가함.
 - ※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만을 다룸
- <수학> 교사용 지도서에 실린 “세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세 집합 사이의 연산이 필요한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 고등학교 공통 과목 <수학>의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집합의 포함관계는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에 간단히 평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교과서 출판사에서 홈페이지 또는 CD로 제공하는 교사용 문제 자료에 수록된 문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2) 평가 문항은 진도운영 계획 및 평가 계획과 일치해야 함

- 학교 시험의 출제 범위는 진도운영 계획과 평가 계획에 제시된 학습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교육과정 상에는 <확률과 통계>로 편성하고 <확률과 통계> 이외의 내용을 지도하고 평가를 실시함. 가르친 내용과 평가한 내용은 일치하지만 교육과정 편성과 일치하지 않음.
- 교육과정 상에는 <수학Ⅱ>로 편성하고 실제로 <수학Ⅱ>의 내용을 지도하였지만 평가 문항에 지난 학기에 편성하였던 <수학Ⅰ>에서 미처 다 평가하지 못한 내용을 섞어서 출제하거나, 복습을 위한 목적으로 <수학Ⅰ>의 내용을 출제함. 교육과정 편성과 가르친 내용은 일치하지만 가르친 내용과 평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 고등학교 <수학>의 진도운영 계획에서는 6개의 대단원 가운데 1~3단원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1, 5, 6단원을 가르치고 출제하여 평가함. 진도운영 계획 상의 단원과 가르친 내용 및 평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3) 문항 출제 시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내용 수준 및 범위를 준수합니다.
-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2015 수학과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10수학02-09] 원점, x 축, y 축, 직선 $y = x$ 에 대한 대칭이동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임의의 점 또는 임의의 직선 $ax + by + c = 0$ 에 대한 대칭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함.
-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되어 있지 않은

$$a^3 + b^3 + c^3 - 3abc = (a + b + c)(a^2 + b^2 + c^2 - ab - bc - ca)$$

와 같은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하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다음의 경우를 다룬다.

$$a^2 + b^2 + c^2 + 2ab + 2bc + 2ca = (a + b + c)^2$$

$$a^3 + 3a^2b + 3ab^2 + b^3 = (a + b)^3$$

$$a^3 - 3a^2b + 3ab^2 - b^3 = (a - b)^3$$

$$a^3 + b^3 = (a + b)(a^2 - ab + b^2)$$

$$a^3 - b^3 = (a - b)(a^2 + ab + b^2)$$

- [중3 수학-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차식의 전개만을 다루야 하지만 4차식의 전개와 관련된 문항도 출제하여 평가함.

(예) $(x + 1)(x + 2)(x + 3)(x + 4)$ 를 전개하십시오.

- [중3 수학-이차방정식 단원]에서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근을 구하는 수준까지만 출제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의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관련된 문항도 출제하여 평가함.

(예) 이차방정식 $2x^2 - 5x - 1 = 0$ 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십시오.



(4)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더라도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는 지양해야 함

- 예를 들어 <수학Ⅱ>의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 등에서 출제한 문항이 <미적분>에서 다루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나 치환적분법 등을 이용하여 해결할 때 더 유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수학>에서 경우의 수에 관련된 평가 문항이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조합 등을 이용하여 해결할 때 더 유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제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사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수학>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학습하는 중복순열 등의 개념을 이용하면 더 쉽게 해결되도록 출제하여 평가함.
- <수학 I>의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이지만 <미적분>의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활용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int (ax+b)^3 dx$ 와 같이 <수학Ⅱ> 수준에서 식을 전개하여 부정적분을 구할 수는 있지만 <미적분>의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5)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 진도 상 이수한 내용의 범위에서만 출제해야 함

- 교육과정 편성 상 아직 이수하지 않은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을 출제하면 안됩니다. 또는 어떤 두 교과가 같은 학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교과 진도 상 다른 교과에서 아직 학습하지 않은 내용은 출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고등학교 <수학>을 학습한 이후에 <수학Ⅱ>를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률과 통계>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 상의 문제는 없으나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분을 이용하여 연속확률변수와 관련된 확률, 평균, 분산, 표준편차 등을 구하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수학 I>, <수학Ⅱ>를 동시에 편성한 경우 교육과정 편성 상의 문제는 없으나 <수학 I>의 수열 단원의 합의 기호 \sum 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학Ⅱ>에서 \sum 기호를 이용한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6) 교육과정 밖의 내용은 정규 수업 시간에 지도하였더라도 출제하여 평가할 수 없음

- 정규 수업 시간에 지도한 내용이더라도 교육과정 밖의 내용은 출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항 내에 단서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도 출제하여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용어와 기호 또한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문제에서 정의하고 출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수학II> 수업 시간에 <미적분>에서 학습하는 역함수의 미분법의 개념을 좌표평면 상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 뒤 출제하여 평가함.
- <수학II>에서 정적분을 이용하여 회전체의 부피를 지도한 뒤 관련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고등학교 <수학>에서 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x]$ 과 같은 가우스 함수, f_n 과 같이 해석학에서 사용하는 함수열의 기호 등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는 용어와 기호를 문항 내의 조건에서 정의한 뒤 이를 활용하는 문항을 출제하여 평가함.
- $a^3 + b^3 + c^3 - 3abc = (a+b+c)(a^2 + b^2 + c^2 - ab - bc - ca)$ 와 같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 수 없는 인수분해 공식을 문항 내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출제하여 평가함.

(7) 이전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던 용어나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함.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출제하여 평가할 수 없음

사례 다음은 위반 사례에 해당함

-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와 같이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었지만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의 용어만 언급하지 않고, 그 개념을 활용(예 : $10 < x < 100$ 이고 $\log \sqrt{x}$ 와 $\log x^2$ 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x 의 값을 구하여라.)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함.
-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_n\}$ 에서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루던 계차수열을 이용하면 용이한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함.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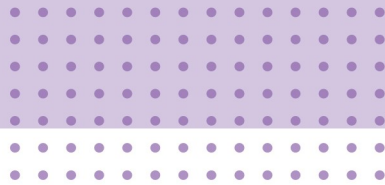
(1)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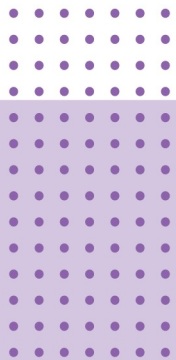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수학 교과에서 운영하는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는 해당 학기의 과목에 대한 기초 과정, 심화 과정, 문제해결 강좌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는 과목과 그 학습 내용에 대한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교내 수학 관련 대회에서 다루는 내용 또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 수학 교과와 관련된 교내 대회로는 수학 경시 대회, 수학 용어 말하기 대회, 수리 NIE 대회, 통계 활용 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내 대회에서는 다루는 내용도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학 경시와 같은 대회의 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험의 범위를 공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사회/도덕

4. 사회 / 도덕

- 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 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 라. 평가 시 유의 사항
- 마.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사회/도덕

4. 사회 / 도덕

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1) 역량 중심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사회과 교과 역량 설정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회 과목, 지리 및 일반사회 관련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과목별 교과 역량이 제시되었습니다.
- 역사 영역 관련 과목(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에서는 역사 사실 이해,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이 교과 역량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는 글로벌 지식 정보 사회와 개인의 일상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 자기 존중 및 대인 관계 능력, 공동체적 역량, 통합적 사고력 등과 같은 교과 역량이 제시되었습니다.

(2) 초등 사회,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는 2018년 고시된 교육과정(2018-162) 적용

- 중학교 급과 고등학교 급 한국사 영역의 중-고 연계 방식이 중학교는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학교급 별 내용 체계가 재편되면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육 과정이 개정 고시(2018-162)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군 사회는 2019년 3월 1일부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교육과정(2018-162)이 적용되었습니다.
- 단, 한국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다른 사회과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고시된 교육과정(2015-74)이 적용됩니다.



(3)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과목 개설

- 공통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중학교에서는 사회 및 역사,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 및 한국사 과목이 제시되었습니다.
-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으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과목이 제시되었습니다.
-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으로는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과목이 제시되었습니다.

(4) 영역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 구성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된 일반화된 지식과 내용 요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통합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 구성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삶의 이해와 환경	행복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도덕적 실천 등을 통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실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관점 • 행복의 조건 	파악하기 설명하기 조사하기 ...
	자연 환경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 자연관 • 환경 문제 	
	생활 공간	생활공간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화 • 산업화 • 정보화 	

-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과목은 대주제와 소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중학교 역사 과목의 내용 체계 구성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제	소주제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 세계의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 •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

- 고등학교 일반사회 및 지리 영역 선택과목의 경우 영역과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경제 과목의 내용 체계 구성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소성, 합리적 선택 • 비용과 편익, 경제적 유인 •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 •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5) 교수학습 및 평가와의 유기적 연계

- 내용 요소와 기능이 결합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역별로 추가 설명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제시되었습니다. ‘학습 요소’는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것이며, ‘성취기준 해설’은 성취기준 중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성취기준에 대한 부연 설명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성취기준 해설’에 등장한다고 해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성취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을 위해 제안한 방법과 유의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및 유의미한 학습 경험 제공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방법과 유의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나.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

(1) 도덕과 교과 역량의 설정 및 역량 함양 교육 실천을 강조함

- 자기존중 및 관리 능력, 도덕적 사고 능력,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도덕적 정서 능력, 도덕적 공동체 의식,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등 6가지의 교과 역량이 제시되었습니다.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과목이 개설됨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도덕’ 과목이 제시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바른 생활’과에서 형성된 인성을 바탕으로 자신, 타인, 사회·공동체, 자연·초월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탐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덕목과 규범을 이해하고 도덕적 기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형성된 가치·덕목 및 규범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 기능 및 실천 능력을 심화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한 탐구와 삶의 이야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도덕적 정체성을 구성하며, 배려적인 인간 관계와 정의로운 공동체 및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덕성과 역량을 기를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제시되고, 진로 선택과목으로 고전과 윤리가 제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윤리적 관점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통합사회’의 목표를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삶의 윤리적 차원에 대한 심화된



인식 능력과 자신의 생활 세계에 근거한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관한 인식 및 해석 능력, 윤리 고전에의 직접적 접근을 통한 사유와 성찰 능력, 실천 역량을 기를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핵심 개념이 아닌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함

-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표가 작성된 다른 교과와 달리 도덕과에서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영역	핵심 가치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윤리학은 이론윤리와 실천윤리로 구분되며 이론윤리가 도덕원리의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라면 실천 윤리는 도덕 원리를 토대로 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1. 현대 생활과 실천윤리 :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① 현대인의 삶과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 ② 실천윤리학의 성격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 윤리학 이해하기 • 윤리 문제에 적용하기 • 윤리적 실천 방안 제안 하기

(4) 교수학습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내용 요소와 기능이 결합된 성취기준이 교수학습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역별로 추가 설명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제시되었습니다. ‘학습 요소’는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것이며, ‘성취기준 해설’은 성취기준 중 자세한 해설이 필요한 성취기준에 대한 부연 설명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성취기준 해설’에 등장한다고 해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성취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을 위해 제안한 방법과 유의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및 유의미한 학습 경험 제공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해당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방법과 유의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1) 학기 단위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년이 아니라 학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학년을 앞당겨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기를 앞당겨 가르치는 경우도 선행 학습에 해당합니다.

사례 2학기에 편성된 과목을 1학기에 가르치는 경우

(2) 편성 과목과 실제 가르치는 과목이 일치해야 함

- 편성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실제 수업 시간에 해당 과목의 내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편성한 과목 대신 입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례 공통과목(통합사회)를 편성하고 실제로는 관련 일반선택과목(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등)을 가르치는 경우

사례 진로선택과목(여행지리, 고전과 윤리 등)을 편성하고, 실제로는 일반선택과목(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등)을 가르치는 경우

사례 전문교과(국제 경제, 국제법 등)를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하고, 실제로는 관련 일반선택과목(경제, 정치와 법 등)을 가르치는 경우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별 성격 및 내용 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과목들의 성격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기존 과목명이 유지된 경우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중학교 사회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국민경제와 세계화' 및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관련 단원의 내용이 일부 축소됨

사례 중학교 역사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체계와 내용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 축소되었음

사례 고등학교 경제 과목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 달리 수요 및 공급 탄력성 관련 내용 삭제됨

사례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 달리 사회 제도(가족제도, 교육제도, 종교제도, 대중매체) 및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 관련 내용이 삭제됨

사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친구·이웃 관계의 윤리' 등의 내용이 삭제됨

사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사회주의 사상의 윤리적 함의' 등의 내용이 삭제됨



(4) 진로선택과목으로 국제 계열 과목들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함

- 전문교과 I 에 해당하는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국제 관계와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등과 같은 국제계열 과목들을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하는 경우, 일반선택과목(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과의 관련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국제 경제 과목을 경제 과목에 선행하여 편성하고, 수업 시간에는 국제 경제 과목에서 다루지 않는 경제 과목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경우

(5) 진도 계획 수립 및 수정 등의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협의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함

- 교과 구성원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도 계획을 작성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해당과목 성취기준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학기초 작성된 진도 계획이 수정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합니다. '학년 별 교과 담당 교사들의 교차 확인, 교과 협의회 확인,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확인'과 같은 절차를 거쳐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진도 계획에 대해서는 동교과 교사들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학교 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에 탑재 되는 학교별 공시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와도 공유해야 합니다.

사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진도 계획표를 연도만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였지만, 관련 내용(성취기준)을 진도 계획표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례 학기초 작성된 진도 계획표에서 2학기에 설정된 내용을 진도 계획표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학기에 가르치는 경우

라. 평가 시 유의 사항

(1) 실제 가르친 내용에 대해 평가해야 함

- 교육과정에 기반한 진도 계획에 따라 가르치고, 실제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만 평가해야 합니다. 진도 계획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고 이에 대해 평가할 경우 선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해 수업을 재구성할 경우 진도 계획 및 평가 계획 등에 관련 성취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목 수업에서 실제 가르친 내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내용을 임의로 평가 문항에서 다룰 경우에도 선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진로선택과목에서 실제 수업에서는 관련 수능 과목에 대해 가르치고, 평가만 해당 진로선택과목 관련 내용으로 실시하는 경우



(2) 평가 계획 수립 및 수정 등의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협의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함

- 진도 계획과 마찬가지로 평가 계획도 교과 구성원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립 또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진도 계획에 제시된 학기 구분을 확인하여, 1학기 평가에서 2학기 진도 예정인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해 평가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 평가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수정 사항을 학교 정보공시 담당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사례 학년 초 작성된 평가 계획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학기 평가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1학기 기말에 출제하는 경우

(3) 평가 계획과 진도 계획간의 정합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진도 계획과 평가 계획의 일관성 확보

사례 진도 계획에는 2학기에 설정된 내용이 1학기 평가 계획에 포함된 경우

사례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실제 실시 일자가 계획서와 다른 경우

사례 진도 계획을 수정하여 2학기 내용을 1학기에 다루기로 하였는데, 평가 계획 또는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례 이전 학기 학습 내용의 지필 평가 반영시 진도 계획표에 해당 내용을 누락한채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

(4)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확인해야 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성취기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수준에 적합하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확인 없이 주제나 활동 명칭만으로 평가 계획을 추상적으로 작성하여 해당 주제나 활동과 관련된 다른 학년 또는 다른 과목의 유사 내용이 평가 문항에 포함된 경우

마.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 방과후학교 또는 교내 대회 참여자를 모집할 때 대상 학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 교내 대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교과목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년에 따라 이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학년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선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학기 단위이기 때문에 교내 대회 등의 행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1학기에 실시되는 교내 대회 등에서 2학기에 다루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례 경제 과목을 2학년에 편성하였지만, 교내 경제 경시대회 참여 대상에 1학년을 포함시키는 경우

사례 도시 지역 학교에서 3학년 이수 과목 관련 방과후학교를 2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운영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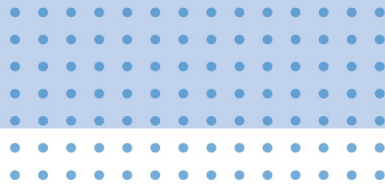
사례 '사회 골든벨', '역사 골든벨' 등을 운영할 때 해당 학년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사전 학습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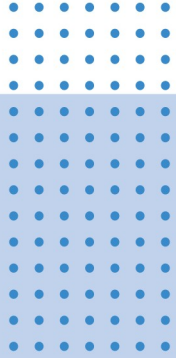
(2) 교내 대회 실시 시기를 결정할 때 관련 교과목의 진도를 함께 고려해야 함

- 교내 대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교과목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내 대회 실시 시점의 출제 범위가 해당 과목의 진도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7월에 실시되는 한국사 경시 대회에서 진도 계획상 2학기에 다루기로 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과학

5. 과학

- 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II | 공교육정상화법의 교과별 적용을 위한 안내·과학

5. 과학

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⁵⁾

(1) 통합 교육과정에 따른 대주제(Big Idea) 중심 통합 구현

-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과 교육과정의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는 한편, 통합교육 과정에 따른 대주제(Big Idea) 중심의 “통합”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초·중학교에서 학년별 통합 단원을 도입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통합과학 과목을 도입하였음.
-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 별로 통합 단원을 구성하여 3~4학년군에 ‘물의 순환’, 5~6학년군에 ‘에너지와 생활’ 단원을 도입함.
- 중학교의 경우 1학년 ‘과학과 나의 미래’, 2학년 ‘재해·재난과 안전’, 3학년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단원을 도입함.
- 고등학교의 경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문·이과 통합형 ‘통합과학’을 도입하여 기존 과학과 구성 영역인 운동과 에너지(물리학), 물질(화학), 생명(생명 과학), 지구와 우주(지구과학)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네 영역을 통폐합하거나 융합하여 핵심 개념(Big Ideas)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2) 학교 교육을 통한 탐구 역량 강화

- 학교 교육을 통한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탐구기능을 중심으로 교과역량을 추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였고, 성취기준 진술문을 내용과 기능을 합쳐 진술하였으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과학 탐구실험 과목을 개발하여 탐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과는 달리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제시되어 있고, 탐구기능이 아니라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기능’은 교과 역량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과 내용 요소와 결합되어 성취기준을 구성함.
- 기능의 요소로는 문제 인식,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5) 본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2015), 2015 과학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에 제시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및 평가, 의사소통 등으로 핵심 역량과 관련되어 있음(김영민 외, 2016).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통합과학	
물질과 규칙성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지구 구성 물질의 원소는 빅뱅과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원자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활용하여 자연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 초기의 원소(생성) 태양계에서 원소 생성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인식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및 평가 의사소통
		원소의 주기율 등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을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과 비금속 최외각 전자 	
	원소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통해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자연의 구성 물질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는 단백질, 광물 등의 물질은 원소들 간의 규칙적인 화학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며, 기존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생명체 주요 구성 물질 신소재의 활용 전자기적 성질 	
시스템과 상호 작용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은 역학적 상호 작용에 의해 유지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력 자유 낙하 운동량 충격량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은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되고, 각 권은 상호 작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기권과 수권의 상호 작용 	
	생명 시스템	세포 등과 같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의 결과로 다양한 (자연) 현상이 나타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포막의 기능 세포 소기관 물질대사, 효소 유전자(DNA)와 단백질 	

[그림 II-5-1]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내용 체계 일부(예시)

(3)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량 적정화

-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해 토의·토론 학습 등 학습 경험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음.
- 내용 체계 표 뒤에는 각 단원 별로 학습 내용과 성취기준, 탐구활동이 제시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음. 특히,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각 성취기준 별로 가르쳐야 하는 수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등을 고등학교 지구과학 II의 '(4) 해수의 운동과 순환' 단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4) 해수의 운동과 순환

... (생략) ...

[12지과II04-03] 해파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천해파와 심해파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지과II04-04] 해일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이해하고,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2지과II04-05] 조석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자료 해석을 통해 각 지역에서의 조석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가) 학습 요소

- 정역학 평형, 전향력, 수압 경도력, 지형류, 에크만 수송, 서안 경계류, 동안 경계류, 서안 강화현상, 천해파, 심해파, 풍랑, 너울, 쓰나미, 폭풍 해일, 조석, 기조력

(나) 성취기준 해설

- [12지과II04-03] 해파는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상하 운동 하면서 에너지를 전파하는 현상으로 바닷물이 직접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한다. **이때 심해파와 천해파의 중간 영역(전이파)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다룬다.**
- [12지과II04-04] 해일 발생 당시의 기압, 만조 시기, 해안 및 해저 지형에 따라서도 해일의 피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 [12지과II04-05] 기조력을 정성적으로 도입하고,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보다 2배 정도 크다는 것을 다룬다. **평형 조석론 정도만 다룬다.**

[그림 II-5-2] 고등학교 지구과학II (4) 해수의 운동과 순환 단원 성취기준



- 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내용의 80% 선으로 적정화하였으며, 중복되는 내용 없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예를 들어, 중학교 과학의 ‘운동과 에너지’ 영역 중 ‘열과 우리 생활’ 단원에서는 비열과 열팽창과 관련된 일상적 응용 내용 삭제, ‘빛과 파동’ 단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취급하던 상의 작도를 삭제하였고, 대신에 거울과 렌즈에서 상의 특징을 비교하도록 하였음.
-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경우 성취기준 개수와 학습 내용의 양을 크게 줄임으로써 학생 참여중심의 탐구와 협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고등학교 과학 I 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 대비 일부 학습 내용을 통합과학과 과학II로 이동하여 학습의 연계성을 높일 뿐 아니라 학습량의 감축을 시도하였음.
- 이처럼 고등학교 과학 I 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을 내용 요소의 변화 양태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의 변화 내용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5-1〉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과학 I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의 양태 변화(예시)
(한국과학창의재단(2015)에서 내용 발체 후 재구성)

구분	내용요소	변화양태	성취기준 변화내용
물리학 I	시간/길이의 측정과 표준	변형	• 다양한 측정방법 등 일부내용 축소 • 국제표준단위계 추가하여 정량적 활동의 기본 지식 습득케 함.
	음파와 초음파	이동	• 고등학교 과학에서 파동의 기본은 물리학 I 로, 자세한 내용은 물리학II로 이동
	마이크와 전기신호	삭제	• 전체 분량 축소와 낮은 중요도 때문에 삭제
화학 I	오비탈, 스핀, 전자배치	변형	• 오비탈과 전자배치를 양자수에 의한 설명체계로 바꿔 간결하고도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조정함.
	보어 모형, 에너지 준위	삭제	
	발열반응, 흡열반응	신설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내용 중 ‘발열·흡열반응’의 수준을 조정하여 도입함.
생명과학 I	가역반응, 동적평형	신설	•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II에서 핵심내용 중 일부인 가역반응, 동적평형 등의 수준을 조정하여 도입
	멘델 법칙	삭제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I 에서 다루었던 ‘멘델 법칙’ 관련 내용이 삭제됨.
	대사성 질환	신설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 I 에서 다루지 않았던 ‘대사성 질환’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
지구과학 I	맨틀대류와 플룸 구조론	신설	• 최근의 연구 결과가 반영된 다양한 맨틀대류 모델과 플룸구조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질 현상을 설명하도록 유도함.
	지질구조, 지사 해석 방법	이동	• 지구과학II에서 가지고 내려옴(지질구조를 별개의 내용으로 다루지 않고 지사 해석과 연계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함)
	온대저기압과 날씨, 태풍과 날씨, 악기상	유지/변형	• 대기대순환은 통합과학으로 이동 • 태풍 발생과정에서 역학적 과정은 다루지 않음.
	우주관의 변천, 케플러의 3법칙, 행성의 공전 주기	변형/신설 삭제	• 지구과학 I 의 ‘지구의 진화’ 내용 추가 • 케플러의 제3법칙을 상세하게 다룸. • 태양(계)는 중학교까지만 다루고 더 이상 다루지 않음. • 일식과 월식의 발생 원리 삭제



- ※ 선행교육 예방 점검 업무와 관련된 중요 판단 근거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과학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선행교육 위반 및 혼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해당 교육과정 문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www.nci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학습내용을 80% 선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내용의 중복을 없애고 연계가 가능하도록 학습내용의 삭제, 이동, 변형, 신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2015),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사항으로 **“학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을 근거로 단위학교의 특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는 있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례 과학 교과 단위 배당기준은 통합과학 8단위, 과학탐구실험 2단위이며 필수 이수단위를 12단위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내 학생 선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졸업 시까지 필수 이수단위(12단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예를 들어,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생이 1학년 통합과학(6단위), 과학탐구실험(2단위)만 이수하고, 2~3학년에는 사회 및 생활교양 과목만을 이수한 경우 3년 동안 과학 교과를 8단위만 이수하였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단위 지침을 위반한 것에 해당됨.** 따라서 과학 교과 4단위를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함.

(2)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 진도 계획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교과 진도 계획은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행해야 함

-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근거하여 학년 및 교과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학년 및 교과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의 사항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해설서를 근거로 상세화, 구체화한다.”, “국가 수준에 제시된 교과별, 영역별, 학년별 교육 내용을 상세화, 구체화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 진도 계획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계획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는 단위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학년별) 교과 진도계획(학기별 정보 공시)을 수립**하여야 함. 따라서 **교과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에 일치하는 교과 진도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교과 진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이렇게 수립된 교과 진도 계획은 학기 별로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된 운영계획을 따르지 않고 계획보다 앞서서 교과 수업을 하는 것은 선행교육 유발 행위가 될 수 있음.

(3)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과 실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서로 일치해야 함

- 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성한 교과목과 실제 운영하는 교과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을 대신하여 다른 교과목을 실제 수업에서 운영하거나 다음 학기 또는 학년에 배워야 할 과목을 먼저 학습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과학 교과를 3단위 편성하고 주중 1시간은 통합과학 수업, 나머지 2시간은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됨.
 - 학교 교육과정에 ‘화학 I’ 교과를 3단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생명과학 I’을 함께 편성하여 운영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됨.

(4)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 운영 계획을 수정하고 운영해야 함

- 한 학기 내에서 진도 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편성한 경우 다음 학기의 학습내용을 이번 학기에 미리 지도하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합니다. 진도 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음 학기 학습할 내용을 미리 지도하는 것은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므로, 변경된 진도 계획을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사례**
- 교과 진도 운영계획보다 학습 진도가 빨라 다음 학기 학습내용을 미리 수업하는 등 운영이 달라졌으나 **수정사항을 공지하고 정보공시에 반영하지 않아 계획과 운영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됨.
 - 교과 진도 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단원 또는 다른 교과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수정사항을 공지하지 않고 정보공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됨.



(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축소 및 삭제된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학습량의 적정화**”이며, 이를 위한 세부 내용으로 “**교육내용의 질적 적정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었더라도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축소 및 삭제된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내용 체계를 보면 ‘물질과 규칙성’ 영역의 핵심 개념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자연의 구성 물질’임.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 제시된 성취기준은 “[10통과01-01]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구성 원소들이 우주 초기부터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됨을 물질에서 방출되는 빛을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다.”, “[10통과01-02] 우주 초기의 원소들로부터 태양계의 재료이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지구와 생명의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분임을 해석할 수 있다.”이며, 학습 요소로는 “우주 초기의 원소(생성), 태양계에서 원소 생성,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 등이 제시되어 있음. 이때,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별과 은하’ 영역에서 제시된 학습 요소인 “별의 탄생과 진화, 은하의 구조” 등의 내용은 삭제**되었음. 이렇듯,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다루었지만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축소 및 삭제된 내용은 교과 진도 계획 및 평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야 함.

(6) 과목별 위계를 확인하고 개설해야 함

-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를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과학 I 및 과학II로 구분되어 있는 과학 교과서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학 I을 먼저 이수한 후, 과학II를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과의 위계가 있는 과학 과목을 편성할 경우 과학 I을 먼저 개설하고 과학II를 나중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례 과목 선택 시 과학 I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과학II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 교과서의 위계를 가지므로 학교는 이러한 **과학 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 I 과목을 이수한 후 과학II를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7) ‘통합과학’의 경우 교육과정을 벗어난 학습내용을 가르치지 않도록 해야 함

- ‘통합과학’ 교과서는 운동과 에너지(물리), 물질(화학), 생명(생명과학), 지구와 우주(지구과학) 영역을 통폐합 및 융합하여 핵심 개념(Big Ideas)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단원 내에서 하나의 주제에 여러 관련 교과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과별 구분이 명확한 과학 교과서의 특성상 한 명의 교사가 전체 내용을 가르치기 어려워 전공 교사 별로 학습내용을 나눠 팀티칭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해 학습 내용의 삭제, 이동, 변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과학'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과학 I 또는 과학II의 학습내용을 가르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통합과학 수업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교사들이 나누어 진행하면서 **문항의 변별도 및 난이도를 높이고자 다음 학기 및 학년 과목의 교육과정인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함.**

(8) 성취기준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학개념에 대한 학년별 경계가 모호하여 상위 개념을 가르치고 있지는 확인해야 함

- 과학 교과 특성은 **동일한 과학개념과 용어라 할지라도 내용 수준에 있어 위계가 있는 상위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은 중학교 1~3학년 '과학'과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학' 및 '과학탐구실험'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과목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과학개념의 위계가 있기 때문에 학년별, 교과별 수준에 맞는 개념을 다루어야 합니다.**

사례 • 중학교 과학 성취기준의 '[9과19-02] 물체의 자유 낙하 운동을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가 일정함을 설명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10통과03-01] 자유 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이용하여 중력의 작용에 의한 역학적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를 비교하면 동일한 중력에 의한 운동 개념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중학교 과학의 경우 연직 방향의 낙하만을 다루게 되며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연직 방향 및 수평 방향의 자유 낙하 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중력에 의한 운동의 수준을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 중학교 과학 성취기준의 '[9과08-02]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화학 I 성취기준의 '[12화학 I 02-02] 양자수와 오비탈을 이용하여 원자의 현대적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를 비교하면 동일한 원자의 구조 개념을 다루고 있으나 중학교 과학에서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됨을 설명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화학 I에서는 양자수와 오비탈 개념을 도입한 원자의 현대적 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학년별 성취수준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다. 평가 시 유의 사항

(1) 교과 평가계획이 진도 운영계획과 서로 일치해야 함

-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하면 “**평가는 학생이 배운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과 평가계획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평가계획은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즉, 진도 운영계획과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편성한 학기별 진도 운영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앞선 진도의 내용을 학습시키거나 앞선 진도의 내용으로 지필평가,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도계획 및 평가계획의 변경을 원한다면 교과(학년) 협의회에서 수립,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그리고 공시의 절차를 거친다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 진도 운영 계획을 세울 때 학교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과 교사들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운영 가능한 진도 운영 계획을 세우고, 평가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례** • 학기 초에 시간차를 두고 교과 평가계획과 진도 운영계획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두 계획 사이에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음. 동일 교과목을 두 개의 학기에 걸쳐 편성하고, **1학기 교과 진도가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정보 공시의 수정 없이 1학기에 미리 지도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였다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함.** 단, 학기 단위 진도 운영 계획안에서의 지도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지도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2학기의 학습 내용의 효율적 지도를 위해 1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일부 평가에 반영할 경우 2학기 진도 운영 계획과 평가계획에 명시되어 있다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2)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함

-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소단원 성취기준별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단원에서 과학개념과 원리에 대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수·학습 활동의 기준으로서 ‘학생들이 각 교과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지식, 기능, 태도)과 이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 또는 특성’을 진술한 것입니다.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할 때에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취기준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벗어나 앞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을 가르치고 평가하거나, 성취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담은 교재를 기준으로 가르치고 평가하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합니다.



- 출제 문항이 위계상 상위 학년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성취기준과 평가 내용의 일치를 위해 상위 학년에 편성된 성취기준을 가져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례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과 성취기준의 [9과01-01]에 대한 해설에서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 및 지권을 구성하는 각 층의 명칭과 상태만 다루며, 지구 내부 구조 탐사에서 **지진파의 특성은 다루지 않는다.**’와 같이 제시되어 있음. 현행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앞서서 [12지과II01-03]의 학습내용 **지진파(s파, p파)를 이용한 지구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과정을 가르치고, 이와 관련된 평가 문항을 제시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됨.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단순히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재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함. 고등학교의 경우 단순히 EBS 교재의 내용을 근거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EBS 교재 등 부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할 때 반드시 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평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판구조론이라는 동일한 학습 내용을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의 통합과학과 지구과학 I 에서 연계하여 다루고 있음. 이때 중학교 과학에서는 대륙 이동설은 대륙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움직여왔음을 베게너가 제시한 여러 증거를 근거로 설명하며,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가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는 정도만 다루고,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은 ‘통합과학’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음. 특히, 통합과학에서는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진과 화산이 지구의 내부 에너지와 물질이 방출되는 과정임을 지구 시스템 상호 작용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지구과학 I에서는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고지자기 등을 다루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상위 학년에 편성된 것을 가져와 추가하거나 평가하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함.

(3)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 대비 축소, 삭제된 내용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함

-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량의 적정화를 위해 성취기준 및 학습 내용의 80% 수준으로 적정화하였습니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일부 학습내용이 축소, 삭제되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항 제작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례 •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성취기준 중 [9과09-03]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저항의 연결에 관한 계산과 혼합 연결은 다루지 않는다.’고 제시되어 있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으로 다루었던 저항의 연결에 대한 계산 문제를 지도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선행**



교육 위반에 해당함.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성취기준을 충분히 비교하고 현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에서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빅뱅우주론은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모두 첫 단원에서 소개됨. 하지만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과목인 ‘과학’에서는 ‘허블의 법칙을 통하여 우주의 팽창을 이해하고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을 안다.’로 제시되어 있지만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에는 ‘[10통과01-01]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구성 원소들이 우주 초기부터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됨을 물질에서 방출되는 빛을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학습내용의 변화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허블의 법칙을 이용하여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인 만큼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함. 한편, 허블의 법칙은 지구과학 I [12지과 I 06-02]에 학습 요소로 포함되어 있음.

(4) 문항 정보표에 제시된 성취기준이 교과 진도 운영 계획표에 나타난 성취기준 범위 내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평가를 위한 문항 정보표는 학기 초에 계획한 교과 진도 운영계획의 성취기준 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2학기 교과 내용의 성취기준을 1학기 평가의 문항 정보표에 제시하고 있거나, 해당 교과목의 성취기준이 아닌 심화 교과목의 성취기준, 또는 학년 범위를 벗어난 성취기준을 문항 정보표에 제시하고 있다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합니다. 학기 초 계획한 교과 진도계획과 성취기준을 살펴 보지 않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제작하거나, 교사의 수업 내용만을 고려해 평가를 계획한다면 문항 정보표에 제시된 성취기준이 교과 진도 운영 계획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4월 중순에 실시되는 평가의 문항 정보표에 교과 진도 운영 계획표의 5월에 계획된 성취기준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한 학기 안에서 학습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이를 문항 정보표에 제시하고 평가하였다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학기 진도 운영 계획표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이 문항 정보표에 기록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선행교육에 위반에 해당**함. 평가를 위한 문항 정보 표를 작성할 때 진도 운영계획표를 살펴보고 한 학기 계획 내에 들어있는 성취기준을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5) 문항의 변별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교육 요소를 활용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취기준 내에서 충분히 학습된 내용을



근거로 심화된 내용이나 난이도가 있는 문항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론에서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처럼 **문항의 변별도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학년의 성취기준에 벗어난 선행교육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례 •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 성취기준의 '[9과08-04] 이온의 형성 과정을 모형과 이온식으로 표현하고,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에서 이온, 이온식이 주요 학습 요소로 제시되어 있음.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전자의 이동만으로 이온의 형성 과정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난이도를 높이고자 화학 I 에서 다루는 원자의 전자껍질 개념을 도입하여 평가 문항을 구성한다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함.

- **통합과학 수업 시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 과학 I 또는 II 수준의 내용에서 다루는 그래프나 사례, 관계식 유도 등을 활용해 평가문항을 제작한다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함. 통합과학 성취기준의 '[10통과03-02]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탐색하고 안전 장치의 효과성을 충격량과 운동량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이 경우 문항의 변별도와 난이도를 위해 충격량과 운동량의 물리학적 관계식을 유도하는 물리학 I 교과 내의 심화 내용을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였다면 통합과학의 성취기준을 넘는 선행교육 위반의 소지가 있음.

(6)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다루고 는 있지만 성취기준 학습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내용이 출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수업 활동의 기준이며, 교수·학습 활동의 가이드라인입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소단원 성취기준별 학습 요소를 안내하여 학습 활동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요소는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교사는 가르치고 평가해야 합니다. 성취기준에서 다루고 는 있지만 **학습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내용에 치우쳐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선행교육 위반**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성취기준 중 '[9과21-05] 사람의 유전 형질과 유전 연구 방법을 알고, 사람의 유전 현상을 가계도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한 학습 요소로 사람의 유전 형질, 가계도 조사 방법이 안내되어 있음.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 요소를 벗어나 사람의 다양한 유전 형질의 우열 관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나,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 되어 있는 혈액형 유전 등의 **부수적인 내용에 치우쳐 가르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면 성취기준에 제시된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한 가계도 분석 등의 학습 요소가 성취되기 어려움.** 또한 수업 시간에 다룬 부수적인 내용을 평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행



교육에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평가 문항의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학습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내용이 출제되지 않는지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7) 평가 계획에서부터 선행교육을 유발하지 않는지, 특정 단원, 특정 평가방법에 치중한 문항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함

- 수행평가는 교과 성취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여야 합니다.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수행 평가가 교육 과정의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교과 진도 계획표와 교육과정 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가 일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 교수·학습 - 평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교과 진도 계획 및 성취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단원 및 성취기준에 치중한 문항 출제가 이뤄지는 것 자체는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필평가에서 특정 단원 및 성취기준에 치중한 문항 출제가 이루어질 해당 단원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 아닌 사소한 개념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어 선행교육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평가 시 일어날 수 있는 선행교육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 1 : **성취기준과 평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성취기준 :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평가내용 : 지질 시대를 구분하고 이언, 대, 기에 해당하는 낱말을 빈칸에 채우세요.
- 사례 2 : **성취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 성취기준 : [10통과05-03]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 평가내용 :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시오.
- 사례 3 : **상위 개념과 풀이 과정을 학생에게 요구하는 경우**
 - 성취기준 : [12물리 I 01-02]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용하여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평가내용 : 지구와 달에서의 로켓의 궤도 운동을 기하학 또는 미분 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8) 평가문항의 발문, 도표, 그래프 및 선택지 등의 내용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대부분의 과학 교과서도 수정·보완되어 학습내용의 축소, 삭제, 이동, 변형 및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 및 학습지의 경우 심화학습 등을 위해 일부 그래프, 그림 등이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게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된 경우가 있어 자칫 선행



교육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발문, 도표, 그래프 및 선택지 등의 내용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벗어나지 않는지, 학년별 내용이 연계되는 단원에 대해서는 위계상 상위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 위해 학습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개념의 위계상 상위 개념을 묻는 문항, 또는 상위 개념 및 풀이 방법을 이용해야만 해결 가능한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학년별 학습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례 • 원자와 주기율표 관련 단원은 중학교 1~3학년군의 ‘물질의 구성’,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화학 I의 ‘원자의 세계’에서 연계됨. 중학교 1~3학년군의 ‘물질의 구성’의 학습 요소는 ‘원소, 원자, 분자, 원소 기호, 이온, 이온식’이고, 통합과학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의 학습 요소는 금속과 비금속, 최외각전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등이며, 화학 I의 ‘원자의 세계’에서 학습 요소는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전기 음성도,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 전자점식, 전자쌍 반발 이론, 분자 구조’로 구성됨. 성취 기준의 내용은 ‘[10통과01-03]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만큼 **‘통합과학’의 문항 출제 시 전기 음성도가 표현된 그림을 사용한다면 선행교육 위반** 사례에 해당됨.

- 별과 우주 단원의 성취기준 ‘[9과23-01] 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별의 표면 온도를 색으로 비교할 수 있다.’를 충족하는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 연주 시차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의 개념 위주로 다룸. 이때 **심화학습을 위해 ‘별의 거리’를 직접 구하기 위한 상위 학년의 풀이 방법인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를 응용하여 제시하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 별의 표면 온도는 별의 색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수준으로만 다루야 함. 또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제공하고 별의 거리를 계산하는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함.

(9)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지필평가 문항을 출제하고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해설을 옆에 두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마지막 걸음은 ‘선생님들과 함께 출제된 문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지필평가 문항을 출제한 경우 교차 점검을 해야 문항 오류를 찾을 수 있고 선행교육 문항 출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 정기고사에서 진행되는 공동 출제에 이은 공동 점검 활동은 문항 오류 및 오타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정임. 이와 같은 **최종 점검과정이 누락됨으로써 선행교육에 위반되는 사례가 자주 관찰되는 만큼 반드시 주의가 요구됨.**



라. 방과후학교 및 교내 대회 운영 시 유의 사항

(1)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수업하면 안 됨

-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에 해당 되므로 선행교육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에 의해 방학 중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수업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 15-16쪽 참조.

(2) 교내 과학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면 안 됨

-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교내 과학대회는 학년 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과학대회에서 2학년에 편성된 과목의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1학년 학생에게는 선행교육 유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Q&A

Q. 과학 관련 연구학교나 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해당 학년을 넘어서는 수준의 교재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해당 학년의 성취기준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편성하고, 이를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Q. 과학II 교과 시간에 과학I의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 진도계획이 일치해야 합니다. 수업은 교과 진도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과목의 해당 학기 교과 진도 운영계획을 넘어서 지도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과목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II 교과를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명과학I의 내용이나 다른 교과 내용의 일부를 지도하는 경우는 가능한 예입니다. 그러나 생명과학I 과목 시간에 생명과학II 과목의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Q.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수업해도 되나요?(예 :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차의 순서를 바꿔서 화학 I 과목 수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 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I 과목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 교과 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3학년 물리학II 수업을 3단위로 편성하고 그 중 1시간은 물리학II 내용으로, 나머지 2시간은 물리학I 수업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학교교육과정에서 편성한 교과목과 실제 운영하는 교과목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과목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교육과정에서 편성된 교과목과 실제 운영 교과목을 달리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변경운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Q.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아닌 EBS 교재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EBS 지구과학 I 내용 출제)

A. 단순히, EBS교재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BS교재 내용이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의 것이라면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항으로 변경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모의고사, 학력평가 등의 문항을 이용해 출제하다 보니 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가능한가요?

A.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학력평가 등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이용해 평가를 하려고 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Q. 편성된 과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에 대하여 수행 평가를 실시해도 되나요?(예 : 화학 I 과목의 수행평가로 화학 II 과목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A. 지도한 교과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평가는 교과목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Q. 통합과학에서 “~충격량과 운동량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물리학적 관계식을 유도하는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가능한가요?

A. 통합과학에서 성취기준은 “[10통과03-02]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탐색하고 안전장치의 효과성을 충격량과 운동량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이며 “상 수준의 평가기준”은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장치를 고안하고, 고안한 장치의 효과성을 충격량과 운동량, 관성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충격량과 운동량, 관성의 단순개념을 이용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물리학적 관계식의 유도는 물리학 I 교과 내의 심화된 내용입니다. 이는 통합과학의 성취수준을 넘는 것으로 선행교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예 : 물리학 II 과목에서 물리학 I 과목의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는 경우)

A.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의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일부의 소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교과목을 두 학기 이상 편성했을 때 첫 번째 학기 기말고사 이후의 내용을 두 번째 학기의 중간고사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충실한 교과목 이수를 위한 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진도표와 평가 계획에 이와 같은 문항 출제 계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능 등의 평가에 대비하고자 학교 또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불일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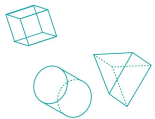


Q. 평가문항을 제작하다 보니까 교과목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항에는 이상이 없는데 출제가 가능한가요?

A. 평가문항은 학생이 배운 교과목의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학기 및 학년에서 배울 교과에 대한 평가는 선행교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별 진도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출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AP, UP 과정으로 일반물리 수업을 개설하고 대학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

A. AP, UP는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고등학생이 미리 이수하여 대학 진학 후 과목 학점을 미리 취득하는 제도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2021년 5월 초판 발행

발 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전 화 | 043-931-0114

팩 스 | 043-931-0884

디자인 | 주식회사 동진문화사 (02-2269-4783)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